

1. 개정(제정)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에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대상·절차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 안전검사 직접 시행 관리방안(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

나.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안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 신설)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작사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 제원통보, 제작결함 시정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다. 내압용기 검사 등 시행(안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안 제57조의12, 제57조의13 신설)

내압용기 검사 및 내압용기 장착검사 시행에 필요한 검사기관,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라.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안 제57조의14부터 제57조의20까지 신설)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에 필요한 내압용기 정기검사 주기, 안전 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마.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 면제(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신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기준인 “경미한 결함”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정조치 면제 절차 등을 정함

바. 이륜자동차 관리대상 확대(안 제99조제1항, 별표1 개정)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대상은 일부 제외

사. 중고자동차 인터넷 판매광고시 정보제공(안 제120조제4항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시에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차량 관련 주요 정보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크기 및 총배기량 등 규모별 세부기준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없게 할”을 “없게 타각할”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명판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4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 형식을 표기하는 경우

나.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를 표기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3년간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자동차를 연간 2,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 다만, 제38조 제1항의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만배후 지역에서 수출 목적으로 운행구간(30m이내)을 정하여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 운행허가번호판(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을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제작자등의 등록신청)”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대행 하는”을 “대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최초 제작자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5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을 “(안전검사시설 등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기준은 별표 4의2”를 “시설 등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4의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안전검사 직접시행 승인신청 등) ①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의4호서식의 안전검사직접시행승인신청서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 확인서 사본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직접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의5호서식의 안전검사직접시행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매년말까지 안전검사를 직접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승인사항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안전검사 직접시행자의 검사방법 및 관리)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검사 직접시행자”라 한다)는 매 분기마다 안전검사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 직접시행자가 시행하는 안전검사 중 최초 검사는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검사의 적정성 등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안전검사 직접시행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으로부터”를 “자동차제작자등

으로부터”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등

제1절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
2. 제40조의7조에서 정하는 시험시설 확보내역
3. 수입자가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지정된 경우에는 최초 제작자와 수입자가 함께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이행한다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

② 제2호에 의한 시험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확인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주소,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등의 변경

2. 외국 최초 부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 등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부품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4의3의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별표4의3에서 정한 시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품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이 가능함을 확인 받은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절 자동차부품의 제원통보 및 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 등

제40조의8(제원의 통보)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부품 형식 등에 대한 표기시행계획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자동차부품 제원표 및 주요성능도
4. 당해 자동차부품이 국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성적서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다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관리번호부여 및 통보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자동차 부품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자기인증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0(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등)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계획 수립 및 조사의 시행 등은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준용한다.

제7장의 제목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 우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부품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부품소유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3호”로, “제작자 등”을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의2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합조사의 대상·내용”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1조의5 및 제4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경미한 결함)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료소비율 저하
2. 원동기 출력의 저하
3.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심사하는 경우

제41조의6(시정조치 면제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을 안날로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시정조치 면제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면제여부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조치 면제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의5 서식의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차명·모델연”을 “차명·모델연도 또는 자동차 부품의 부품명·생산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작결함”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작연월일”을 “제작연월일 또는 자동차부품의 부품명·형식 및 제작연월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장치와”를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또는 자동차부품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매대수”를 “판매대수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대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 대행자는”으로,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

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도지사
2.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3.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4.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5. 제149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
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제45조제1항제1호 중 “따른자동차”를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비용과 자동차”를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1조제1항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 또는 제2항3호”로,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조도계·색도계 스크린, 반사성능시험기, 휘도계, 측각기, 색차계 등의 등화장치 시험시설

제49조제1항제3호라목 중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영상막”을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스크린, 레이저 투사기”로,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을 “운전자 시계범위 시험시설”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9조의3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7장제3절의 제목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은 자동차를”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로, “구매자”를 “구매자(부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제작결함 안내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장치”를 “장치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52조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제8장의3(제57조의7부터 제57조의2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57조의7(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및 법 제35조의6제7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안전기준은 별표5의3과 같으며, 내압용기에 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의 신청)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 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해당 내압용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의9(불합격 내압용기의 파기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실시할 것

제57조의10(내압용기의 표시 및 각인 등)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57조의11(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사실제출)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에 대한 검사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들은 별지 제34호의7 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생략되는 내압용기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신청 등) ①법 제3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압용기장착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압용기 안전기준에 대한 기술심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4호의8 서식에 따른 내압용기 기술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4의10호 서식에 의한 내압용기 장착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료장치 개략도
2. 내압용기장착도
3. 부품 설명서
4. 내압용기 및 연료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
5. 변경 전·후대비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성능시험대행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심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기술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4의9호 서식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심사의 경우 동일형식 최초 1대에

대하여 실시하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기술심사 후 최초 안전검사에 한함) 및 별표5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또는 용기부속품 주변 보기쉬운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기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13(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등)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에 대한 안전기준은 별표 5의5와 같으며,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안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14(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그 외의 자동차는 3년을 말한다. 다만, 장착된 각각의 내압용기의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내압용기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②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하여 유효기간 기산은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는 제75조를, 검사기간은 제77조제2항을,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는 제7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내압용기 정기검사”로, “검사유효기간”은 “내압용기 정기검사유효기간”으로, “검사기간”은 “내압용기 정기검사기간”으로 본다.

제57조의15(내압용기 수시검사의 사유)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에 대한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2. 기타 차대차(車對車) 사고 등 시·도지사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57조의16(내압용기의 파기 등) ① 제57조의19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내압용기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잔류가스의 처리설비를 갖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파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이하 “폐가스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잔류가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잔류가스의 처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의 파기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입회하에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별지 제34호의12 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기한 용기를 31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파기증명서를 발급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제57조의14에 따른 다음 유효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내압용기를 파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2의 내압용기 파기 증명서를 파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17(내압용기 재검사의 각인 및 표시)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

6과 같다.

제57조의18(내압용기 재검사의 신청)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의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2. 별지 제34호의13 서식의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서
3.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수시검사에 한한다)

제57조의19(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 ① 제57조의18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8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상세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상세정밀검사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특수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4의14 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 결과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합격한 경우에는 별표 5의9의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를 연료주입구 덮개 등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내압용기의 결함부분

사진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0(불합격한 용기 등에 대한 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는 제57조의19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제1종)로 등록 또는 협업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교체 또는 점검·정비를 받은 경우 제57조의15제2항의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다시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또는 용기밸브를 교체한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별지 제34호15 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의 합격품 여부, 각인 표시사항 및 연료누출 여부 등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내압용기 정기검사 재검사기간내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7조의12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의21(내압용기의 안전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연료 충전압력의 감압 조

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내압용기의 검사시설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내압용기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57조의22(내압용기검사의 확인)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9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용기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검사대상, 검사내용 및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5의3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57조의23(내압용기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용기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수집, 검사 등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의한 내압용기(용기 부속품을 포함한다)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24(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의10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회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의25(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들은 내압용기

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내압용기 취급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의26(내압용기 자료의 기록유지 등)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 내압용기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내압용기 또는 국내에 수입된 내압용기의 제작결합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다른 국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 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내압용기제조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내압용기제조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제작결합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내압용기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 사항

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정비 및 교환 내역

5.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6. 내압용기 구매자 연락처

제57조의27(내압용기 자료의 제출)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7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제2항제7호나목 중 “손상 또는 훼손”을 “심한 파손 또는 미설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치 또는 부착물

제80조제2항제11호 중 “허용기준초과”를 “허용기준초과에 위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등색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제80조제2항제12호나목 중 “전조등시험기”를 “점등상태 불량·등색기준 부적합 및 전조등 시험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또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등 설치(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조명 등의 경우에는 제외)

제8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전산장애 등으로 검사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제2항에 따른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수기(手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정상적으로 복구된 후 자동차검사결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2조제2항 중 “2월”을 “12월”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을 받고자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라 함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9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 개정에 따라 중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소유사실확인(신청)서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⑦ 제6항제1호에 따른 소유사실확인(신청)서 발급 요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소유사실확인(신청)서를 발급하고 별책 제13의 소유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이륜자동차번호판”으

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3호 중 “발급 및 봉인”을 “발급”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1조제5항제2호 중 “성명·주소”를 “성명·생년월일 등”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1조제2항에 따라 제시신고된 자동차 중 양도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이전등록 되지 않은 경우 폐업할 수 없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인터넷 첫 화면에 모두 보여주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3호는 인터넷 둘째 화면에서 제공한다

1. 매매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사양 내용
2. 매매용자동차의 압류·저당 및 제 세금 미납 정보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5.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된 자동차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제131조제1항제3호 중 “점검·정비”를 “점검·정비·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생정비”를 “재생정비·변경”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압용기

제148조제1항 중 “회계를 감독”을 “회계 등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 및 30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의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제150조의2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제150조의2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관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2제2호”를 “영 제14조의2제3호”로 한다.

제16장에 제154조의3 및 제15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8조의4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도 및 운영계획서

2. 정관 및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전담기관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전담기관 업무규정

5. 전담기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현황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여부 확인에 있어서 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조건 상세내용, 지정기준 요건 적합여부 확인방법 등에 대한 세부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 신청시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전담기관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54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관련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8조7의 제1항 각호 내용에 대하여 상세계획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68조의7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8조의7제1항 각호 내용에 대하여 상세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4의3,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27을 신설하고, 별표1, 별표 15, 별표 20,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제18호의2, 제19호의2, 제23호의4, 제23호의5, 제24호의2, 제24호의3, 제26호의5, 제26호의5, 제34호의6부터 제34호의15까지, 제63호의3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 제16호, 제18호, 제19호, 제25호, 제32호의2, 제37호, 제45호, 제57호, 제69호, 제77호부터 제82호까지, 제89호, 제90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책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9는 2012년 5월 25일부터, 제99조제1항, 제6항, 제7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139조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내압용기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사업용 승합자동차 : 이 규칙 시행일
 2.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제1호 이외의 자동차 및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날
- 제3조(부품자기인증 제원의 전산정보 입력 적용례)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제원의 전산정보 입력은 전산처리조직이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고 그 전까지는 수기로 할 수 있다.
- 제4조(제작 또는 판매중인 부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 또는 판매중인 부품은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부품자기인증 후 부품자기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표기부호 배정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이전 표기부호 배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표기부호 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내압용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경과조치)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압축천연가스(CNG) 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내압용기를 교체한 상태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내압용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 제7조(내압용기 장착검사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 동안은 제57조의12에 의한 기술심사는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전 기술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안전검사 직접시행 승인신청자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직접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제작자들은 이 규칙 시행일에 직접안전검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직접시행승인검토서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이륜자동차 종별구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이륜자동차는 별표1에 따른 종별구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이륜자동차 중 이 규칙에 따라 소형 또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소형 또는 대형 이륜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인수·인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이전 추진 중인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부식·흙 등에 대한 점검과 교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다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업무를 인수할 때 이 규칙 시행이전 추진한 업무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국무총리실의 확인 하에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9.4.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미만 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 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 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 룬 자동차	50cc미만(최고출력 4kW 이하)	배기량이 125cc 이하(최고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배기량이 125cc 초과 250cc 이하(최고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배기량이 250cc 초과, 최고출력 15kW 이상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주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2.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 최고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4. 이륜자동차는 제99조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 용 자동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 용 겸 화물 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 합 자동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현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 물 자동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힘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주)

1.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2. 이륜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별표 4의3]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제40조의7관련)

1. 브레이크호스

시 설 품 명	세 부 기 준
1. 체적 팽창 시험기 (유압)	○시험압력 : 20MPa 이상
2. 파열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압력 : 49MPa 이상(유압), 6.2MPa 이상(공기)
3. 내 휨성 시험기 (유압)	○시험압력 : 1.8MPa 이상
4. 인장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하중 : 1,700N 이상
5. 항온수조(유압)	○시험온도 : 85℃이상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6. 저온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온도 : -45 ~ -48℃ 유지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7. 호환성 시험기 (유압)	○시험온도 : 120℃유지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8. 내오존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온도 : 40℃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9. 동적 오존 시험기 (유압)	○시험온도 : 40℃ 유지 ○연속시험시간 : 48시간 이상
10. 고온가진 시험기 (유압)	○가압성능 : 5.6MPa/sec 이상 ○감압성능 : 5.6MPa/sec 이상 ○가열성능 : 146℃/30min 이상
11. 염수분무 시험기 (유압, 공기)	○염수분무 : 24시간 이상
12. 내유성 시험기 (공기)	○시험온도 : 100℃ 유지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13. 진공상태 시험기 (공기)	○시험압력 : 635mmHg 이하 유지
14. 내염화 아연성시험기 (공기)	○시험유체 : 염화아연 50% 수용액 ○시험시간 : 200시간
15. 공기압누설시험기	○시험압력 : 1 MPa/2분

(공기)	
16. 삽입계이지 (유압, 공기)	○공칭내경 측정가능
17. 확대경(유압, 공기)	○확대배율 : 7배 이상

2. 등화장치

구 분	시설품명	세부기준
가. 비대칭 전조등 나. 가스방전식 전조등 다. 적응형 전조등	1. 회전가대	○ 연직면 $\pm 30^\circ$ 이상 ○ 수평면 $\pm 90^\circ$ 이상
	2. 조도계	○ 정도 : 일반형 A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KS C 1601) ○ $\pm 5\%$ 이내
	3. 색도계	○ 측정방법 :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
	4. 표준전구	○ 전조등용 표준전구 확보 상태 ○ 성적서 상태유지 할 것
	5. 스크린	○ cut-off line을 확인할 수 있을 것
	6. 암실	○ 길이 : 31m 이상 ○ 너비 : 4m 이상 ○ 기타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3. 후부반사기

시설품명	세부기준
1. 회전가대	○ 연직면 $\pm 30^\circ$ 이상 ○ 수평면 $\pm 90^\circ$ 이상
2.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 $0.2 \sim 1.5^\circ$ ○ $0 \sim 420\text{mcd/Lux}$ 이상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3. 암실	○ 길이 : 31m 이상 ○ 너비 : 4m 이상 ○ 기타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4. 프로그램	○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시험할 수 있을 것

4. 좌석안전띠

시설품명	세부기준
1. 인장하중 시험기	○하중: 11,500N이상
2. 내구성 시험기	○버클 내구성 시험기 ○리트랙터 내구성 시험기
3. 동하중 시험장비	○시험차를 장착한 상태에서 30g 이상의 관성하중을 가할 수 있을 것

	○대차 : 시험조건에 따른 동하중 시험이 가능할 것
4. 인체모형	○인체모형(TNO-10)
5. 인체모형의 이동량 측정	○동하중 시험시 인체모형의 이동량 측정이 가능할 것
6. 냉·온장고	○온도(최소 15도이하에서 최고 70도 이상) 및 습도(60%이하에서 70%이상)조절이 가능한 온장고 ○온도(최소 -25도이하) 및 습도(60%이하에서 70%이상)조절이 가능한 냉장고

5. 후부안전판

시설품명	세부기준
1. 시험품 고정장치	○해당시험품을 고정할 수 있을 것
2. 하중부하장치	○수직모서리 곡률 반경이 $5\pm 1\text{mm}$ 이고 너비 200mm, 높이 250mm 이하의 하중장치 ○하중: 해당시험품을 시험할 수 있을 것
3. 하중 측정장비	○하중 측정범위 : 해당시험품을 측정할 수 있을 것 ○정도 : $\pm 5\%$
4. 변위 측정장비	○변위 측정범위 : 400mm 이상 ○정도 : $\pm 5\%$
5. 데이터 출력장비	○하중 및 변위

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 관련)

1. 자동차용 내압용기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 1) 내압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2) 내압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 3) 내압용기의 구조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4) 내압용기의 치수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충전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5) 내압용기의 용접은 그 용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6) 내압용기의 열처리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7) 내압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8) 내압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나. 검사기준

- 1) 내압용기의 검사는 이 별표 제1호 가목의 기술기준과 이 별표 제1호 나목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 2) 설계단계검사는 내압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 제1호 가목의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①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③ 단열성능
- ④ 내압성능
- ⑤ 기밀성능
-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3)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4) 생산단계검사는 내압용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 제1호 가목의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①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③ 단열성능
- ④ 내압성능
- ⑤ 기밀성능
-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기술·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 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자동차용 내압용기 부속품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 1) 내압용기 부속품의 재료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2) 내압용기 부속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3) 내압용기 부속품은 그 내압용기 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내압용기 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 4) 내압용기밸브에는 밸브의 개폐를 표시하는 문자와 개폐방향을 표시(핸들로 개폐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경우에는 “열림↔닫힘”으로 표시)할 것

나. 검사기준

- 1) 내압용기부속품 검사는 이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 2) 설계단계검사는 내압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①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 ② 내압성능
 - ③ 기밀성능
 - ④ 작동성능
 - ⑤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 3)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 실시할 것
 - 4) 생산단계검사는 내압용기 부속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① 내압성능
 - ② 기밀성능
 - ③ 작동성능
 - ④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3.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기술·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 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수입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인정기준 및 공인검사기관이 인정한 항목에 대하여 이 별표에 따른 기술·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 할 수 있다.

합격 용기 등에 대한 표시(제57조의10 관련)

1. 내압용기에 대한 표시

가. 내압용기의 각인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함으로써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 1) 내압용기제조자등의 명칭 또는 약호
-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 3) 용기의 번호(로트 및 시리얼 번호)
- 4) 내용적(기호 : V, 단위 : L)
- 5)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 W, 단위 : kg)
- 6)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 7)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MPa)(초저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외한다)
- 8) 최고충전압력(기호 : FP, 단위 : MPa)(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초저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에 한정한다)
- 9) "㉞"자의 각인 : 크기(6mm×12mm)

나. 내압용기 외면의 표시

- 1) 내압용기 외면의 도색은 회색으로 할 것
- 2) 내압용기 외면에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 할 것

2. 내압용기 부속품에 대한 표시

내압용기 부속품의 제조자등은 용기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것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부속품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부속품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다. 질량(기호 : W, 단위 : kg)

라.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마.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MPa)

바.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 1)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PG
- 2)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PG
- 3)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PG
- 4)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 LT

사. 다음과 같이 "㉞"자의 각인(크기: 3mm×5mm)

[별표 5의5]

자동차용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안전기준 (제57조의13 관련)

1.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용기·용기밸브·안전밸브·과류방지밸브·역류방지밸브·가스충전구·가스충전밸브·주밸브·감압밸브·용기고정장치·압력계 및 연료계 등 필요한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사용하는 연료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내압성을 가지며 그 배관에 대한 손상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3.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최고충전압력 등 적절한 표시를 할 것
4. 자동차의 용기는 자동차의 연료저장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5. 자동차의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법 제35조의6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별표 5의6]

합격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제57조의10 관련)

1. 합격표시 등

내압용기 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 및 용기부속품을 관리하기 위해 제2호의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를 연료 충전구 등에 부착하거나, 다음 사항을 내압용기 및 용기부속품에 표기할 수 있다.

가. 내압용기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내압용기 재검사의 연월

2.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		
자동차등록번호		합격인
재검사 연월일		
유효기간 만료일		
최고충전압력		
번호	용기의 번호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1		
2		
3		
4		
5		
6		
7		
8		
9		
10		

비고

1. 재질은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
2. 글자의 표기는 3년 이상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
3. 합격인은 직경 15mm인 원형인 “합”자 표시
4. 유효기간 만료일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용기 중 가장 짧은 기간을 말한다.
5. 최고충전압력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용기 중 가장 낮은 압력을 말한다.

[별표 5의7]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



[별표 5의8]

내압용기 재검사 기준 및 방법 (제57조의19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및 방법

가. 일반기준

- (1)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압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한 상태로 제시할 것.
- (2) 연료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5의3, 별표5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 (3)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은 자동차관리법 제35의6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내 일 것.
- (4) 상세정밀검사 및 내압특수검사의 가스누출검사는 연료가 충전된 상태에서 연료계통 및 내압용기를 가스누출감지기 및 감지액 등을 사용하여 실시할 것.
- (5)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표기내용이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세정밀검사

- (1) 환기시설을 갖춘 검사장에서 내압용기가 자동차에 장착된 상태로 누출검사를 실시한 다음 2명이 상호 교차로 육안 및 검사기기로 내압용기 등을 검사한다.
- (2) 내압용기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반사경 등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내압용기 고정장치 설치 또는 차체 구조상 곤란한 부분은 계측기 및 육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3) 공간이 협소하여 계측기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식 등의 깊이 측정을 생략하고,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다.
- (5) 검사는 초음파두께측정기, 내시경 및 버니어캘리퍼스 등 결함 측정 장비와 확대경 등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다. 내압특수검사

- (1) 상세정밀검사 항목에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추가한다.
- (2)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방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3) 내압특수검사를 받은 용기밸브 및 안전장치는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상세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항 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동일성 및 표시사항 확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표기가 등록증 내용과 일치할 것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의 각인 또는 각인 표시사항이 법령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표기가 일치한지 여부 확인 각인 또는 각인 표시사항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지 여부 확인
손상	절상/ 긱힘/ 흠/ 마모	손상 깊이는 금속재 0.5 mm이하, 복합재 1.25mm이하일 것 복합재의 섬유는 끊어짐, 노출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단, 섬유의 끊어짐이 원주방향으로 발생한 흠(실선)의 경우 금속라이너의 부식이 없을 시 제외함	절상·긱힘·흠·마모에 의한 손상깊이 등을 계측기 및 관능으로 확인
	마모	복합재의 마모깊이는 1.25mm 미만일 것	용기의 마모를 관능으로 확인하고 손상의 정도를 계측기로 측정
	응력균열	용기의 재질이 응력을 받아 용기 또는 복합재에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용기 및 복합재의 응력균열 등의 손상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함몰 (우그러짐)	손상된 깊이가 16 mm 미만이고, 그 손상의 직경 또는 길이가 50 mm 이상일 것	손상의 깊이, 직경 및 길이를 계측기로 확인
	충격손상	복합재가 충격·사고 등에 의한 타격 손상 면적이 1cm ² 미만일 것	충격·사고 등에 의한 타격 면적을 계측기로 확인
부식	오목부식 (공식)	화학물질, 산화물 또는 녹에 의해 발생한 작은 구멍(공식)이 용기 최소두께의 25% 미만일 것	녹 등에 의해 발생한 구멍의 깊이를 계측기로 확인
	일반부식	화학적 산화 또는 녹으로 인한 부식의 깊이는 용기 최소두께의 15%미만일 것	화학적 산화 또는 녹으로 인한 부식된 면적 및 깊이를 계측기로 확인
	선형부식	공식의 간격이 한 개의 공식 너비보다 큰 경우로서 그 부식 깊이가 용기 최소두께의 10% 미만이고, 그 부식의 길이는 100 mm 미만일 것	선상부식의 깊이 및 길이를 계측기로 확인
	섬유층 아래 부식	복합재 표면 또는 복합재의 끝과 인접한 금속라이너 표면에 부식이 없을 것	복합재료와 금속라이너 경계층 또는 연결부분의 부식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필요시 접착 테이프를 분리한다)

항 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외적 영향 결함	그을림	탄화된 흔적이나 그을림이 없거나 물에 씻겨 질 것	탄화된 흔적이나 그을림을 물로 씻은 후 관능으로 확인
	화학물질 침투	화학물질의 침투로 재질의 용해 등의 변형이 없거나 그 영향으로 영구적인 변색 또는 손상이 없을 것	화학물질의 침투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자외선상해	복합재의 내압부 재료가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복합재 표면의 광택이 퇴색되거나 백색으로 변색되는 경우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외선에 의한 손상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열해 (熱害)	금속재 및 복합재에 화염 또는 전기 아크에 의한 열 손상이 없을 것	화염 또는 전기 아크 등 열에 의한 손상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변형	부풀음	용기의 부풀음 또는 휨이 없을 것	부풀음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기포/들뜸	용기의 표면에 기포 또는 들뜸이 없을 것.	기포 또는 들뜸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압력방출 장치		손상 깊이는 0.5mm미만일 것	관능 및 계측기로 확인
연료장치		연료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연료계통에 가스누출이 없을 것	연료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관능으로 확인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누출여부 확인

[별표 5의9]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제57조의19 제2항 관련)

1. 각인

내압용기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각인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제2호와 같은 합격표 부착으로 각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가.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나. 재검사연월

2.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			
자동차등록번호			합격인
재검사연월일			
유효기간만료일			
최고충전압력MPa	개수		
용기의 번호		밸브/안전장치번호	
1			
2			
3			
4			
5			
6			
7			
8			
9			
10			

← 80mm ←

↑ 80 mm ↑

비고

1. 재질은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각인 또는 인쇄
3. 합격인은 직경 15mm인 원형인 “합”자 표시
4. 유효기간 만료일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용기 중 가장 짧은 기간을 말함
5. 최고충전압력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용기 중 가장 낮은 압력을 말한다
6. 합격표는 연료충전구 덮개 안쪽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 충가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15] <개정 2010.2.18>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관련)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차상태에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상태등을 감안하여 관능·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자동차의 제원측정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구조변경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 (2) 타이어요철형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자동차의 전조등이 4등식일 때 좌·우 각 1개씩 주행빔의 광도, 광축을 측정할 때 나머지 전조등의 경우
- (4) 「소방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 (5)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출장검사인 경우
- (6)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가.동일성확인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상태가 양호한 것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의 각인 또는 표시사항이 법령에 적합하고, 등록된 내용과 일치할 것(신규검사에 한한다)	각인 또는 각인 표시사항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지 여부 확인
나.제원측정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뒤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

		의 초과여부 확인
다. 원동기	(1)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시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2)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4) 유허유계통에서 유허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유허유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5)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냉각계통의 손상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라. 동력 전달장치	(1)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변형 여부 확인
	(2) 클러치페달 유격이 적정할 것	페달유격의 적정여부 확인
마. 주행장치	(1)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2) 타이어 요철형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타이어의 요철형무늬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재생타이어 장착여부 확인
	(4) 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	튜브가 없는 타이어의 장착여부 확인
바. 조종장치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동·등화·경음·창닫이기·세

		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사. 조향장치	(1)조향륜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2) 조향계통의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3)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아. 제동장치	(1)제동력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퍼센트(뒷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동일 차축의 좌·우차륜 제동력의 차이는 당해 축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다)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2)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름 등의 누출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확인
	(3)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자. 완충장치	균열·절손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속업쇼버의 손상 및 기름등의 누출여부 확인

<p>차. 연료장치</p>	<p>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p>	<p>(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여부를 확인 (다) 연료의 누출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여부 포함) (라) 과충전방지장치의 설치여부, 변형 및 손상확인</p>
<p>카. 전기 및 전자장치</p>	<p>(1) 전기장치 (가)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나) 자동차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다)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라) 차실 내 및 차체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p>	<p>1) 접속·손상·절연 및 설치상태 확인 (2) 구동축전지의 차실과의 격리상태 확인 (3) 고전원전기장치의 전기배선 보호기구 설치상태 확인</p>
	<p>(2) 전자장치 (가)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구동력제어장치(TCS), 전자식차동제한장치 및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p>	<p>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p>
<p>타. 차체 및 차대</p>	<p>(1)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p>	<p>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p>

	(3)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표시 확인
	(4)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차체의 외관 확인
파.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여부 확인
하. 승차장치	(1) 좌석·승강구·조면·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않으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좌석·승강구·조면·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2)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여부 확인
	(3)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입석이 허용된 자동차의 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4)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버스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일 것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버스의 하차문 발판에 승객이 있는 경우 하차문이 열리는지와 하차문이 열린상태에서 원동기 가속페달이 작동되지 않는지 여부확인
거. 물품적재장치	(1)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2)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3)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상태를 확인(변경이 있는 경우 계측기등으로 측정)
너. 창유리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여부 확인
더.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1)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2)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	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여부 확인
	(3)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있는 구조가 아닐 것</p> <p>(1) 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 칼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2등식 : 1만5천칸델라 이상 (나) 4등식 : 1만2천칸델라 이상</p> <p>(2) 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단위 : 센티미터)</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상</td> <td>하</td> <td>좌</td> <td>우</td> </tr> <tr> <td>좌측</td> <td>10</td> <td>30</td> <td>15</td> <td>30</td> </tr> <tr> <td>우측</td> <td>10</td> <td>30</td> <td>30</td> <td>30</td> </tr> </table>	구분	상	하	좌	우	좌측	10	30	15	30	우측	10	30	30	30	<p>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여부확인</p> <p>좌·우측 전조등의 광도와 주광축의 진폭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p>
구분	상	하	좌	우													
좌측	10	30	15	30													
우측	10	30	30	30													
러. 등화장치	<p>(3)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p> <p>(4)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금지등화가 없을 것</p>	<p>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비상점멸표시등·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의 확인</p> <p>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p>															
며. 경음기 및 경보장치	<p>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사이렌의 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의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p>	<p>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여부 확인</p> <p>경적음 및 사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에 한함)</p>															
버. 시야확보 장치	<p>(1) 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p> <p>(2) 창담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p>	<p>후사경·창담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p>															
서. 계기장치	<p>(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p>	<p>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p>															

	것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 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3)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작동여부 확인
어. 소화기 및 방화장치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저. 내압용기	용기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용기의 변형이 없을 것	용기 등이 고압가스관련법령에 의한 합격품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확인
처. 기타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3.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제8조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4. 임시검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사항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 정기검사중 환경관련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20] <개정2005.2.5>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제90조관련)

구분	자격	직무
검사책임자	1. 자동차검사주무로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업무 총괄
검사주무	1. 자동차검사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검사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검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자동차검사진로의 검사업무 관리 및 적합여부 판정 나.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다. 검사시설의 관리
검사원	1.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2. 자동차검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내압용기 재검사 분야에 한한다)	가.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나. 검사시설의 관리 다. 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주

1.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 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 검사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주무경력에는 다음과 같이 당해 기술인력의 검사원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주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자동차검사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경력으로 본다.
 - (2) 자동차검사산업기사인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경력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경력으로 본다.
3. 자동차검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검사산업기사 또는 자동차검사기사의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자격 취득전의

[별표 27]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

구 분		확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차 사업장(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포함) · 해체작업장(폐기물보관시설 포함) · 부품보관 창고(용적기준) 		4,500㎡이상 600㎡이상 600㎡이상
장 비	· 구난차(견인능력 3톤이상)	1대이상
	·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 중량계(계량능력 20톤이상)	1대이상
	· 압축기(투입용적 10㎡이상)	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택1식 이상
	· 파쇄기(가압능력 500마력이상, 시간당 5톤이상)	
	· 전단기(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	
	·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가스처리 시설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 장치	1식이상
	· 가스누출감지기	1식이상
	· 소화기	1식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 연료유, 오일류, 부동액 회수· 보관시설	1식이상
	· 에어컨 냉매 회수· 보관시설	1식이상
주 : 1. 환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해체작업장은 장비의 진· 출입이 용이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옥내시설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부품보관 시설은 부품의 성능을 보전할 수 있는 옥내시설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시설은 건축법상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0] <개정 2010.11.25>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납 부 자	금 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나. 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2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천500원으로 한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동일 시·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300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500원으로 한다.
5.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천원
6.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으로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7. 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8. 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800원. <u>다만, 항만배후지역에서 수출용 차량선적을 위해 단거리(30m이내)를 운행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u>
9. 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0.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1.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2.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3천원
13.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등록	1건에 대하여 2만원
나. 변경등록	1건에 대하여 1만3천100원
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15.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경매장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7.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가.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1건에 대하여 1만원
나. 전산자료의 제공	1건에 대하여 300원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8.30>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연구 계획서(시험·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800원. 다만 수출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1일인 경우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신규등록 신청·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 라.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항만배후 지역에서 수출용 차량선적을 위해 단거리(20~30m)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번호판 발급을 생략합니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4.1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원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제작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내 제작·조립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등록목적		<input type="checkbox"/> 판매목적	<input type="checkbox"/> 자가사용
제작 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승용	<input type="checkbox"/> 승합 <input type="checkbox"/> 화물 <input type="checkbox"/> 특수 <input type="checkbox"/> 이륜
<p>「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p> <p><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토해양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사항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 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제38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혈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	처리기간	15일(7일)
수수료	없음		

[별지 제18호의2 서식]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원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제작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내 제작·조립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자동차부품명(생산자)			
<p>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항·제3항 및 제40조의6제4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재발급 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토해양부장관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 서류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사항
	<p>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p> <p>2. 별표4의3에서 정한 자기인증을 위한 시험시설 확보내역. 다만, 시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확인을 할 수 있는 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계약이 가능한 시험시설은 자기인증 확인이 가능함을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p> <p>3. 수입자가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지정된 경우에는 최초 제작자와 수입자가 함께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합의 시정을 이행한다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p> <p>4.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작자 등록번호	자기인증 능력 [] 확보 [] 미확보
----------	---------------------------

제작자 구분	구분 1	[] 자동차 제작자 [] 이륜 자동차 제작자
	구분 2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수리하고 제작자등록번호를 배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품제작자 구 분	제작자명	
	수입자명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부품명		
<p>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6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작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해양부장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23의4호 서식]

안전검사 직접시행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제작자 명		
	대표자 명		
	주 소		
	제작자 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안전검사 시설	안전검사 대상차종		
	소 재 지		
<p>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의2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국토해양부장관 귀하</p>			
첨부서류	1. 제38조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확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23의5호서식]

발급번호 :

<u>안전검사 직접시행 승인검토서</u>				
신청인	제작자등명 :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안전검사 시설·장비	안전검사 대상 차종			
	시설·장비 소재지			
<p><승인서 검토결과></p> 				
<p>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에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직접시행을 승인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수수료</td> </tr> <tr> <td style="padding: 5px;">없음</td> </tr> </tabl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p> 년 월 일</p> <p> 성능시험대행자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별지 제24호의2서식]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			
부품제작자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품명		형식	
최초 부품제작자			
변경전부품 제원관리번호		제작연도	
자동차부품의 개략적인 설명(※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			
<p>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부품제작자등 (서명 또는 날인)</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부품 형식 등에 대한 표기시행계획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자동차부품 제원표 및 주요성능도 4. 당해 자동차부품이 국내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성적서 			
통보하는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4호의3서식]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통보서발급번호			
부품제원관리번호			
부 품 제 작 자	제작자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부품명			
형식			
최초부품제작자			
자동차부품 제작번호			
<p>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능시험대행자 인</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자동차제원표										
1	제 작 자 명 (원 제 작 자 명)			제 작 자 등 록 번 호						
2	차 명			6	종 별					
3	형 식			7	유 형					
4	차 대 · 차 체 형 상			8	구 분					
5	승 차 정 원 (명)			9	용 도					
10	차 량 중 량 (kg)			()	17	원 동 기	형 식			
11	최 대 적 재 량 (kg)			()			최 고 출 력 (ps / r p m)	/		
12	차 량 총 중 량 (kg)			()			기 통 수 / 총 배 기 량 (cc)	/		
13	차 체 제 원 (mm)	길 이	()	18			사 용 연 료			
13		너 비	()		연 간 소 비 율 (km/L)					
		높 이	()		19	축 간 거 리 (mm)				
14	하 대 내 측 지 수 (mm)	길 이	()	20	윤 간 거 리 (mm)		전 후			
		너 비	()							
		높 이	()	21	하 대 읍 셋 트 (mm)					
15	공 차 시 하 중 분 포 (kg)	전	전 축	()	22	변 속 기		종 류		
			후 축	()				단 수		
		후	전 축	()	23	타 이 어 형 식		전 후		
			중 축	()						
16	적 차 시 하 중 분 포 (kg)	전	전 축	()	24	립 형 식		전 후		
			후 축	()						
		후	전 축	()	25	차 대 번 호 (1~8자 리)				
			중 축	()		26	모 델 연 도			
		후 축	()	27	축 별 설 계 허 용 하 중			전		후
28	선 택 사 양									

주

1. 하대내측지수, 하대읍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승용자동차의 경우 적차시하중분포, 축별설계허용하중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적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ps/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기통수/총배기량(cc)”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l)”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시정조치 면제신청서		
신청인	제작자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부품)	차명(부품명)	모델(생산 연도)
	차종(부품종류)	원동기형식
	생산기간 및 대상대수 (생산기간 및 대상 부품개수)	안전기준 부적합조항
	차대번호(부품제원관리번호)	
면제 요청 사유	※ 면제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p>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6호의5호 서식]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	
신청인	<div style="width: 45%;">제작자명</div> <div style="width: 50%;">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div>
	<div style="width: 45%;">대표자명</div> <div style="width: 50%;">생년월일</div>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부품)	<div style="width: 45%;">차명(부품명)</div> <div style="width: 50%;">모델연도(생산연도)</div>
	<div style="width: 45%;">차종(부품종류)</div> <div style="width: 50%;">원동기형식</div>
	<div style="width: 45%;">생산기간 및 대상대수 (생산기간 및 대상 부품개수)</div> <div style="width: 50%;">안전기준 부적합조항</div>
	차대번호(제원관리번호)
검토결과	
<p>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시정 조치 면제검토결과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국토해양부장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2호의2서식]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 : ○○○○(주)

주 소 :

연락처 :

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

귀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주)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제작사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등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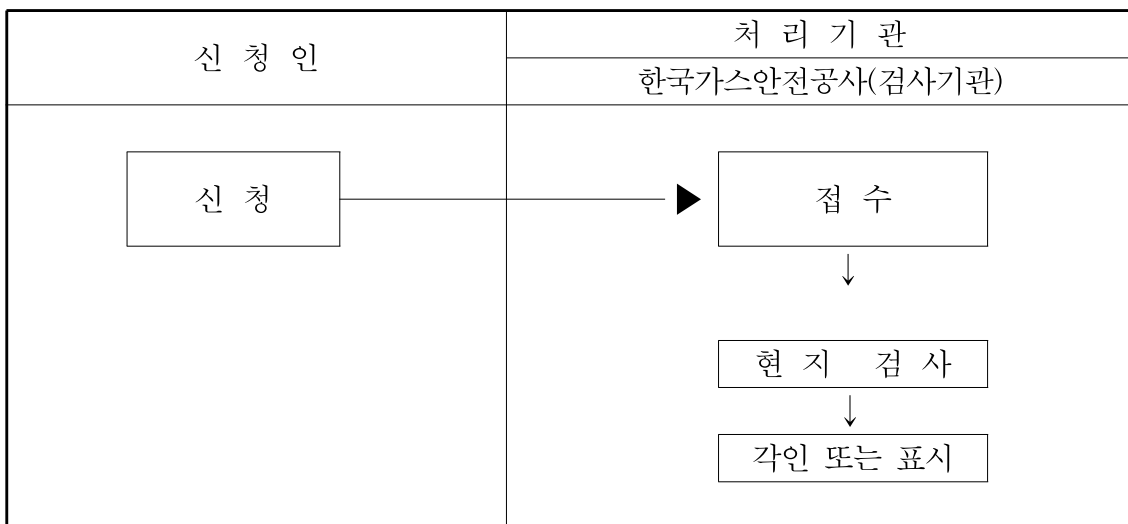
전화 : 080-357-2500

인터넷 홈페이지 : 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

내압용기검사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설계단계	처리기간 7일
		<input type="checkbox"/> 생산단계	
신청인	상 호		
	성명 (대표자)	사업자 (주민)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사업소소재지			
종류 및 내용적			
내 압 용 기	<input type="checkbox"/> CNG용 __ℓ <input type="checkbox"/> LNG용 __kg <input type="checkbox"/> LPG용 __kg		
내압용기부속품	<input type="checkbox"/> CNG용 <input type="checkbox"/> LNG용 <input type="checkbox"/> LPG용		
검사 희망일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위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34호의7 서식]

내압용기검사 생략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
사 업 소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내 압 용 기 의 종 류		
내압용기 부착품의 종류		
수 량		
<p>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의11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를 전부 생략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p>		
※ 구비서류 : 내압용기 검사생략 소명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4호의8 서식]

※접수번호

내압용기장착 기술심사 신청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차종
내압 용기	설치 위치		형식
	사용 압력		용적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압용기 기술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연료장치 개략도 2. 내압용기장착도 3. 부품 설명서 4. 내압용기 및 연료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 5. 변경 전·후대비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성능시험대행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자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34호의9 서식]

발급번호 : - - -

내압용기장착 기술심사 결과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	차 명		차 종	
내압 용기	설치위치		형 식	
	사용압력		용 적	

내압용기 및 장착부품의 주요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압용기 기술심사 결과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인

[별지 제34호의10 서식]

내압용기 장착검사 신청서 (□최초, □계속)			
신 청 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 동 차	차 명		형 식
	차 종		원 동 기 형 식
	기술심사결과서 발 급 번 호		검사신청대수
검 사 받 을 장 소			
차대번호내역		내압용기번호	밸브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2조제1항 규 정에 의하여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내압용기장착 심사결과서 사본 1부 2. 내압용기장착도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34호의11 서식]

발급번호 : - - -

내압용기장착 검사증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	차 명		형 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내압용기 주요제원	설치위치			
	용 적			
	사용압력			
	형 식			
<p>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내압용기 장착검사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능시험대행자 인</p>				

[별지 제34호의13 서식]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3일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순 번	용 기				밸브 및 안전장치
	용기 번호	용기형식	사용연한	내압용기검사 일	밸브 번호
1					
2					
3					
4					
5					
6					
7					
8					
9					
10					
검사희망일					
검 사 구 분		[] 정기검사		[] 수시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자동차소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첨부 서류	정기검사	수시검사			수수료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4호의14 서식]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표												
자동차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누적주행거리		km									
순번	용 기									밸브 및 안전장치		
	용기번호	형 식	사 용 연 한	감압차량	외관검사				누출차	밸브번호	외관차	누출차
손상					부식	외형결함	변형					
1												
2												
3												
4												
5												
6												
7												
8												
9												
10												
기타검사내용												
종합판정								유효기간		만료일		
불합격 내용								재검사기간				
검사자	책임검사원						검사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검사대행자</p>												
<p>※ 내압용기 불합격조치에 대한 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합격판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용기를 교체한 후 이 결과표를 제시하고 다시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내압용기 정비업자로부터 점검·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7호서식]

[] 점검 [] 정비 [] 원상복구 명령서		
자동차소 유자	성명(명칭)	
	주소	
자동차	차명 및 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적발내용		
적발일시 및 장소		
명령사항		
명령사유	<input type="checkbox"/>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이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점검 <input type="checkbox"/> 정비 <input type="checkbox"/> 원상복구 <input type="checkbox"/> 임시검사 <input type="checkbox"/> 내압용기 수시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 임시검사 [] 내압용기 수시 검사	검사장소	
	검사일	
<p>「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p>		
<p>주 :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지시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임시검사 또는 내압용기 수시검사 지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10mm×297mm(일반용지 60g/m²)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35의8조제1항,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7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발급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업체명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지면적(m ²)	종사원 수(명)	

검사업무개시 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1부	수수료
	2.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20,000원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 g/m²)

[별지 제63호의3서식]

소유사실확인(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정당한 권리자	상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용본거지주소			법정동 코드
이륜 자동차	차명 및 승차정원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차대번호		차종(규모)	
	용도		유형	
대리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권의 사용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소유 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 · 면장 · 동장 · 출장소장 귀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 · 면장 · 동장 · 출장소장 인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첨 부 서 류	1. 이륜자동차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말한다) 1부. 2.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4. 매매, 증여, 교환계약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증여자·교환자 또는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 1부.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 사항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종 :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2. 규모 : 소형으로 작성할 것
3. 용도 : 승용, 화물수송용, 소형화물 및 장애자용, 업무용, 경주용, 경찰용,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4. 유형 : 일반형, 특수형, 기타 3륜형, 기타 4륜형, 기타 ATV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60 g/m²)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 른 자 동 차 번 호					차대번호		
사 용 폐 지 신 고 일 자			년 월 일				
폐지당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차명		차종 (규모별)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연식	
비 고							
<p>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읍장 면장 인 동장</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 록 신 청 업 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매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해체재활용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 업 장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명칭·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 리 기 간	21 일
수 수 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장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매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해체재활용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수수료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13,1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양도 · 양수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 · 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 · 양수 원인	[<input type="checkbox"/>] 매매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증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수수료
	2.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2,000원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휴업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 호					
① 차명		② 자동차 등록번호		③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km <input type="checkbox"/> 작동불량
④ 연식		⑤ 검사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최초등록일			⑧ 변속기 종류	<input type="checkbox"/> 자동 <input type="checkbox"/> 수동 <input type="checkbox"/> 세미오토 <input type="checkbox"/> 무단변속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⑦ 원동기형식					
⑨ 차대번호			⑩ 보증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보증 <input type="checkbox"/> 보험사보증	
⑪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상이 <input type="checkbox"/> 부식 <input type="checkbox"/> 훼손(오손) <input type="checkbox"/> 변조(변타) <input type="checkbox"/> 도말			
⑫ 불법구조변경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⑬ 사고유무(단순수리 제외) (□유 □무)	침수유무(□유□무)
⑭ 자기진단 사항	항목	양호	정비요	⑮ 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ppm 매연: %
	원동기				
	변속기				
⑯ 주요장치	항목	해당부품	상태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압축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정비요		
	오일누유	실린더 헤드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실린더 블럭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오일 유량 및 오염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냉각수 누수	실린더 블럭	□없음 □미세누수 □정비요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냉각쿨러(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냉각수량 및 오염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부식)			
고압펌프(커먼레일)		□양호 □정비요 □불량			
변속기	자동 변속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스틀시험(전진)	□양호 □슬립 □충격 □출력부족		
		스틀시험(후진)	□양호 □슬립 □충격 □출력부족		
	수동 변속기 (M/T)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기어변속장치	□양호 □물림/빠짐 이상 □소음 □정비요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누유 □슬립 □소음 □정비요		
	등속조인트		□양호 □고무부트 손상 □정비요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소음 □유격 □정비요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작동상태	스티어링 기어	□양호 □소음 □유격 □정비요		
		스티어링 펌프	□양호 □소음 □정비요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정비요		
제동	브레이크 오일 유량상태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정비요		
	배력장치 상태		□양호 □정비요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정비요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정비요		
	실내송풍 모터		□양호 □소음 □정비요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소음 □정비요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윈도우 모터 작동		□양호 □소음 □정비요		

제 호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소 유 자	상 호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자 동 차 의 표 시	등 록 번 호				차 명					
	차 종				형 식 · 연 식					
	용 도				원 동 기 형 식					
	차 대 번 호									
	검 사유효기간									
점 검 · 검 사 사 항	동 일 성 확 인		<input type="checkbox"/> 차대번호 : <input type="checkbox"/> 원동기형식							
	등 록 사 항 확 인									
	구조·장치의 안전 및 성능확인			구 변	불 량	수 리	갱 환	분 해	양 호	조 정
				◎	○	△	X	W	V	A
	점 검 개 소		점 검 결 과		점 검 개 소		점 검 결 과			
	⑩기 관				⑬조 향 장 치					
	⑪동 력 전 달 장 치				⑭등 화 장 치					
	⑫제 동 장 치				⑮주 행 장 치					
	⑯차 대 번 호 확 인				⑰축 전 기 기 계 장 치					
	⑱차 대 번 호 확 인		⑲봉 인 확 인				⑳주 소 변 경 확 인			
<p>「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경매대상자동차의 점검·결과를 고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경매장명칭 성명(대표자) ①</p>										

33331-37011비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10.2.18>

※제 호 정비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선임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해임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정 비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임(해임)일자			
	자 격 내 용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합 격 일 자
	정 비 실 무 경 력	근 무 사 업 체 명	근 무 기 간	
해 임 사 유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선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사 업조합)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책 13]

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제99조 제6항 관련)

발급 번호	이륜자동차의 표시				정당한 권리자			신청일	발급일
	차명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차대번호	차종 (규모)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364mm×257mm
(보존용지(2중) 7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p> <p>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p> <p>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p> <p>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p> <p>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p> <p>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p> <p>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p>	<p>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p> <p><삭 제></p>

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
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
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
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
(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
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
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
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
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
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

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②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크기 및 총배기량 등 규모별 세부기준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

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
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
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
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
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
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
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
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
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

--.

1. ~ 3. (현행과 같음)

4. -----

----- 없게 타각할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
우에는 명판을 이용하여 표기
할 수 있다.

가.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 형
식을 표기하는 경우

나.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
동차에 차대번호를 표기하
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

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 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

1. 삭 제

2. 최근 3년간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자동차를 연간 2,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 다만, 제38조 제1항의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만배후 지역에서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30m이내)을 정하여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
----- 임시운행허가번호판(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 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제작자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제31조(자기인증 기준) -----

-----자동차제작자등

-----.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①-----
자동차제작자등-----
----- 자
동차제작자등 -----

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동차제작자등 -----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

-----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 -----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 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

제작자등 -----
-----.

② -----

--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
-----.

③ 자동차제작자등-----

----- 자동차
제작자등 -----

-----.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행하는 -----

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 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제작자 등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피견인자동차 1대를 제외한 동일한 형식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 . <단서 삭제>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 자동차제작자등-----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한 제원과 동일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자동차제작자등

1. ~ 3. (현행과 같음)

③ ----- 자동차제작자등

제37조(안전검사) ① -----

1. ~ 4. (현행과 같음)

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 설>

<신 설>

②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신 설>

조제3항 -----

----- 자동차제작자등-----

-----.

제38조(안전검사시설 등의 기준

등) ①-----

----- 시설 등은 다음 각 호-----.

1. 별표 4의2의 시설을 갖추 것

2.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갖추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

----- 자동차제작자등-----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안전검사 직접시행 승

인신청 등) ①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의4호서식의 안전검사직접시행승인신청서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 확인서 사본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직접시행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의5호서식의 안전검사직접시행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매년말까지 안전검사를 직접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승인사항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안전검사 직접시행자의 검사방법 및 관리)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이하

<신 설>

“안전검사 직접시행자”라 한다)는 매 분기마다 안전검사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 직접시행자가 시행하는 안전검사 중 최초 검사는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검사의 적정성 등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결과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3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안전검사 직접시행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9조(제원의 통보) ①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39조(제원의 통보) ① 자동차제작자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제작자등
으로부터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 자동차제작자등-----

(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 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조사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 (생략)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조사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사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조사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동차제조사등-----
-----.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제조사
등-----
----- 자동차제조사등-----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동차제조사등-----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 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등

제1절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 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
2. 제40조의7조에서 정하는 시험시설 확보내역
3. 수입자가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지정된 경우에는 최초 제작자와 수입자가 함께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이행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

② 제2호에 의한 시험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확인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등의 변경
2. 외국 최초 부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 등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부품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안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4의 3의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별표4의3에서 정한 시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품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이 가능함을 확인 받은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절 자동차부품의
제원통보 및 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 등

제40조의8(제원의 통보) ① 부품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

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
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부품 형식 등에 대한
표기시행계획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자동차부품 제원표 및 주요
성능도

4. 당해 자동차부품이 국내 부
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
하는 성적서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제작자등으
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입력한 다음 별지 제24호의3
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
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관리번호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
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자동차 부품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자기인증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0(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등)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계획수립 및 조사의 시행 등은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준용한다.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7장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

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 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 7.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제작자등

5. 자동차제작자등

6.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 우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제작결합의 내용
2. 제작결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합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합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합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부품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합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③-----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부품소유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3호-----

-----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등-----

-----.

④ 제1항 및 제2항-----

-----.

제41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명령)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 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3.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

4.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1조의4(제작결합조사의 시행)

① (생략)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
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등에게 제작결합조사의 대상·
내용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제작결합조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경미한 결합) 법 제31

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합”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
다.

1. 연료소비율 저하
2. 원동기 출력의 저하
3.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제작
결합심사평가위원회에서 소
비자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신 설>

심사하는 경우

제41조의6(시정조치 면제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을 안날로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시정조치 면제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면제여부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조치 면제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의5 서식의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

제42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

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합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합조사결과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합 내용
3. 제작결합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합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합 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

1. ----- 차명·모델연도 또는 자동차부품의 부품명·생산연-----
2.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합-----

②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생략)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 제작자등-----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

-----.

1. -----
----- 제작연월일
또는 자동차부품의 부품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또는 자동차부품의 -----
3. -----
----- 판매대수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현행과 같음)
5.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소유자-----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가.·나. (생략)

② 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
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 조치
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
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6. -----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

가.·나.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
작자등-----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
작자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
----- 다
음 각 호의 자-----

-----.

1. 시·도지사
2.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3.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4.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5. 제149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

④ (생략)

제45조(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0조의3에 따른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합시정명령 및 제작결합조사에 관한 사항

3.·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① -----

-----.

1. -----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2.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

3.·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
-----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2. (생략)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

-----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부품 -----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

----- 제41조제1항제3호 또는 제2항3호-----

----- 자동차제작자
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부품 ---

-----.

1.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

② -----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 제작자등-----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

-----.

1.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
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
자등-----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어

3. -----

가. 나.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조도계·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다. 조도계·색도계 스크린,
반사성능시험기, 휘도계,
측각기, 색차계 등의 등화

라.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 차. (생략)

4.·5. (생략)

② ~ ⑤ (생략)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생략)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

장치 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스크린, 레이저 투사기 ----- 운전자시계범위 시험시설

마. ~ 차.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자동차제작자등-----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제작자등-----

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절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제50조(자료의 제공) ①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자동차제작자등-----
----- 자동차제작자등-----

④ (현행과 같음)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제50조(자료의 제공)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

----- 구매자(부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② (생략)

제51조(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 또는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의 제작 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생략)

서 같다)-----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제작결함 안내문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자료의 기록유지 등)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등-----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
-----.

1. ----- 자동차(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 -----
----- 자동차(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

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나.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
· 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
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
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
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
(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
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
합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나. (생략)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
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
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
·정비 및 교환 내역

5.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제작자등-----

가. 자동차제작자등-----

나. 자동차제작자등-----

4.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치
또는 자동차부품-----

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5. (현행과 같음)

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

제52조(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

제52조(자료의 제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

----- 자동차제작자등-----

②-----

----- 자동차제작자등-----

----- 자동차제작자등-----

제57조의7(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및 법 제35조의6제7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안전기준은 별표5의3과 같으며, 내압용기에 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의 신청)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 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해당 내압용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의9(불합격 내압용기의 파기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실시할 것

제57조의10(내압용기의 표시 및

각인 등)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57조의11(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사실제출)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에 대한 검사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들은 별지 제34호의7 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생략되는 내압용기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신청 등) ①법 제3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압용기장착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압용기 안전기준에 대한 기술심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4호의8 서식에 따른 내압용기 기술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4의1

0호 서식에 의한 내압용기 장착
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료장치 개략도

2. 내압용기장착도

3. 부품 설명서

4. 내압용기 및 연료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 내압용기안
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

5. 변경 전·후대비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성능시험대행자가 요구
하는 기술적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심사 신청
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4의9호 서식에 따른 기술심
사 결과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심사의 경우 동일형
식 최초 1대에 대하여 실시하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
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3

5조의7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기술심사 후 최초 안전검사에 한함) 및 별표5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또는 용기부속품 주변 보기쉬운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기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13(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등)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에 대한 안전기준은 별표 5의5와 같으며,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안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14(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그 외의 자동차는 3년을 말한다. 다만,

장착된 각각의 내압용기의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내압용기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②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하여 유효기간 기산은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는 제75조를, 검사기간은 제77조제2항을,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는 제7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내압용기 정기검사”로, “검사유효기간”은 “내압용기 정기검사유효기간”으로, “검사기간”은 “내압용기 정기검사기간”으로 본다.

제57조의15(내압용기 수시검사의 사유)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에 대한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2. 기타 차대차(車對車) 사고 등 시·도지사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57조의16(내압용기의 파기 등)

① 제57조의19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내압용기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잔류가스의 처리설비를 갖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파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이하 “폐가스류 처리업자” 라 한

다)에게 잔류가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잔류가스의 처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의 파기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입회하에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별지 제34호의12 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기한 용기를 31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파기증명서를 발급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제57조의14에 따른 다음 유효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내압용기를 파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2의 내압용기 파기 증명서를 파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만 자동차 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17(내압용기 재검사의 각인 및 표시)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6과 같다.

제57조의18(내압용기 재검사의 신청)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의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2. 별지 제34호의13 서식의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서

3.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수시검사에 한한다)

제57조의19(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 ① 제57조의18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8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상세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상세정밀검사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 특수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4의14 서식의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합격한 경우에는 별표 5의9의 내압용기 재검사 합격표를 연료주입구 덮개 등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내압용기의 결함부분 사진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0(불합격한 용기 등에 대한 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는 제57조의19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제1종)로 등록 또는 협업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교체 또는 점검·정비를 받은 경우 제57조의15제2항의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이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다시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또는 용기밸브를 교체한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별지 제34호15 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의 합격품 여부, 각인 표시사항 및 연료누출 여부 등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내압용기 정기검사 재검사기간내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7조의12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의21(내압용기의 안전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연료 충전 압력의 감압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내압용기의 검사시설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내압용기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57조의22(내압용기검사의 확

인)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

조의9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용기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검사대상, 검사내용 및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5의3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57조의23(내압용기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용기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수집, 검사 등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의한 내압용기(용기 부속품을 포함한다)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24(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 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의10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회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의25(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내압용기 취급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의26(내압용기 자료의 기록유지 등)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 내압용기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내압용기 또는 국내에 수입된 내압용기의 제작결합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다른 국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내압용기제조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내압용기제조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제작결합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내압용기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정비 및 교환 내역

5.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6. 내압용기 구매자 연락처

제57조의27(내압용기 자료의 제출)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7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략)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차체 및 차대

가. (생략)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신설>

8. ~ 10. (생략)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허용기준초과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

-----.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심한 파손 또는 미설치

다.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치 또는 부착물

8. ~ 10. (현행과 같음)

11. -----

----- 허용기준초과에

위배

12. -----

가. 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등색기준 부적합, 택시표시 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13. · 14. (생략)

③ ~ ⑤ (생략)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①·② (생략)

<신설>

나.----- 점등상태 불량
· 등색기준 부적합 및 전조
등 시험기-----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또는 교통수단이용 광
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등 설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조명 등의 경우에는 제외)

13. · 1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
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전산장애
등으로 검사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
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
사결과표, 제2항에 따른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를 수기(手記)
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산정보처리조직이 정상적으로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

·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라 함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④ -----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④ 제2항의 이륜자동차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항에 따라 -----

----- 제21조에 따른 -----

----- . -----

----- .

⑤ 제3항-----

----- .

⑥ 법 제48조제1항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소유 사실확인(신청)서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⑦ 제6항제1호에 따른 소유사실확인(신청)서 발급 요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소유사실확인(신청)서를 발급하고 별책 제13의 소유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
----- 이륜자동차번호판 -----

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② ~ ⑥ (생략)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⑤ (생략)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①·② (생략)

<신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3. -----

----- 발급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 ④ (생략)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항” 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
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1. (생략)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 5. (생략)

⑥ (생략)

제113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② (생략)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
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
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
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성명·
생년월일 등

3.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13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폐
업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제
121조제2항에 따라 제시신고된
자동차 중 양도되지 않았거나,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타인에게 이전등록 되지 않은 경우 폐업할 수 없다.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인터넷 첫 화면에 모두 보여주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제3호는 인터넷 둘째 화면에서 제공한다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

1. 매매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사양 내용
2. 매매용자동차의 압류·저당 및 제세금미납 정보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5.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된 자동차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점검·정비·변경
4. -----
----- 재생정비·변경

②·③ (생략)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148조(지도·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내압용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8조(지도·감독) ①-----

----- 회계 등을 지도·감독-----.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0조 및 30조의2-----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

의8의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 ~ 9. (생략)

②·③ (생략)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1. (생략)

<신설>

2. (생략)

3.·4. (생략)

5. ~ 7. (생략)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

7.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

-----.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 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4. (현행 제2호와 같음)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8. ~ 10.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2제3호 -----

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54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8조의4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도 및 운영계획서
2. 정관 및 이에 준하는 약정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전담기관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전담기관 업무규정
5. 전담기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현황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여부 확인에 있어서 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조건 상세내용, 지정기준 요건 적합여부 확인방법 등에 대한 세부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 신청시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전담기관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54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관련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

<신 설>

는 자는 법 제68조7의 제1항 각호 내용에 대하여 상세계획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68조의7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8조의7제1항 각호 내용에 대하여 상세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